

##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연구윤리규정

2010. 12. 15. 제정  
2012. 12. 20. 1차 개정  
2018. 06. 01. 2차 개정  
2020. 08. 16. 3차 개정  
2024. 01. 02. 4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학술지 『지역 사회 현안과 담론』의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 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저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그 자체로 윤리 지침 위반이 된다.
5.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 결과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7.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은 준수해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의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할 시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4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속히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3.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된다. 또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까지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5. 심사자는 심사 논문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논문심사를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저자 윤리)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고,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2.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 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 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6.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연구부정행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표절: 타인의 연구결과를 자신의 연구결과 혹은 주장으로 제시하거나 인용에 대한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2.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동일하게 투고하는 행위
3. 위변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논문저자의 부당한 행위: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배제하는 행위
5. 그 밖에 사회적 통념과 연구윤리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제7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사후조치) 연구 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

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1.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2. 5년간 연구소 학술지에 투고금지
3. 해당 논문이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에 게재 취소를 공지하고, 부정행위자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